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한성철 소유물건
(2025타경41529)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정석훈

감정평가서번호: SB-20250318-1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솔빛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장 현 선

| | | | | | | |
|----------------------------|----------------------------|--------------|-------------------------|-----------------------|-----------|--------------|
| 감정평가액 | 육억이천만원정 (₩620,000,000.-) | | | | | |
|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정 석 훈 | 감정평가 목 적 | 법원경매 | | | |
| 제출처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5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한 성 철 (2025타경41529) | 감정평가 조 건 | - | | | |
| 목록표시 근 거 | 귀 제 시 목 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준시점 | 조 사 기 간 | 작 성 일 | | |
| 기 타 참고사항 | - | 2025.03.21 | 2025.03.18 ~ 2025.03.21 | 2025.03.24 |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 정 | | 감 정 평 가 액 | |
|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 가 | 금 액 |
| | 구분건물 | 1개호 이 | 구분건물 | 1개호 하 여 | - | 620,000,000 |
| | 합 계 | | | | 백 | ₩620,0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지하철 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화신노블레스5차 제1층 제103호)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1) 대상물건 개요

| 소재지 |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3-4외 11필지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쇼핑로 64 | | | | | | |
|-------------|--------------|---|-----------------|-----------------|------------|-----|----------------|----|
| 건물명 동·호수 | | 화신노블레스5차 제1층 제103호 | | | | | | |
| 구조 및 층수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 | | | | | |
| 사용승인일 | | 2017.01.03 | | | | | | |
| 구 분 | | 전유 면적 (㎡) | 공용 면적 (㎡) | 분양 면적 (㎡) | 대지권 (㎡) | 용 도 | | 비고 |
| 기호 | 호수 | | | | | 공부 | 현황 | |
| 1 | 제1층 제103호 | 38.115 | 22.1175 | 60.2325 | 5.3354 | 소매점 | 소매점 (공실 상태) | - |

2)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사항)

| | |
|-----------|---|
| 신장동 293-4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신장동 294-15 |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
|------------|--|

3) 주위 환경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주상용부동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3월 21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03월 21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음.

본건에서는 의뢰인이 제시한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이 없음.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 1)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의거함.
- 2)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감정평가방법

본건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위치별·층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 동류형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비교검토는 하지 않았음.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없음.

4.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평가액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한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참조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였음.
- 2) 본건의 위치확인서 집합건축물대상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탐문으로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임.

1)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 호 | 소재지 | 층 /호 | 전유면적 (㎡) | 거래금액 (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
|--------|-------------------------|----------------------|-------------|-------------|------------------|------------|------------|
| A | 서정동 847-* 화신노블레스4차 | 제1층 제10*호 | 33.54 | 565,600,000 | 16,863,447 | 2023.03.17 | 2016.04.21 |
| B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5차 | 제1층 제103호 (본건) | 38.115 | 480,600,000 | 12,609,209 | 2022.12.15 | 2017.01.03 |
| C | 신장동 324-**외 화신노블레스7차 | 제1층 제10*호 | 26.65 | 408,620,000 | 15,332,833 | 2021.06.10 | 2017.10.27 |
| D | 지산동 768-*외 트리플큐브 제비동 | 제1층 제10*호 | 28.8 | 440,000,000 | 15,277,778 | 2021.01.21 | 2020.04.20 |

(2) 비교 사례의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A)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정보정

본건 거래시 제3자인 감정인이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사례는 실거래신고된 사례로 인근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 사례로 판단됨.(1.00)

3) 시점수정

본건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의 지역별 자본수익률 중 본건과 유사한 집합상가의 시·도별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음.

(1) 상업용 부동산 자본수익률

(단위 : %)

| 지역 | 유형 | 2023년 1Q | 2023년 2Q | 2023년 3Q | 2023년 4Q | 2024년 1Q | 2024년 2Q | 2024년 3Q | 2024년 4Q | 2025년 1Q |
|----|------|----------|----------|----------|----------|----------|----------|----------|----------|----------|
| 경기 | 집합상가 | -0.07 | 0.01 | -0.04 | 0.22 | 0.36 | 0.43 | 0.32 | 0.15 | 미발표 |

(2) 시점수정치 산정

| 기간 | 계산식 | 시점수정치 |
|----------------------------|---|---------|
| 2023.03.17 ~ 2025.03.21 | $(1 - 0.0007 \times 15/90) \times (1 + 0.0001) \times (1 - 0.0004) \\ \times (1 + 0.0022) \times (1 + 0.0036) \times (1 + 0.0043) \\ \times (1 + 0.0032) \times (1 + 0.0015) \\ \times (1 + 0.0015 \times 80/92) \approx 1.01579$ | 1.01579 |

※ 미발표된 자본수익률은 직전분기 자본수익률을 연장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 구 분 | | 격 차 율 | | 비 고 |
|------------|---|--------------|------|---|
| 조 건 | 세항목 | 사례 (A) | 본건 | |
| 단지 외부요인 |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구조 등) 등 | 1.00 | 0.95 | 본건은 사례대비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등 단지외부요인에서 열세함. |
| 단지 내부요인 |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 1.00 | 1.00 | 본건과 사례는 건물 관리상태 등 단지 내부요인에서 대등함. |
| 호별 요인 |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 1.00 | 1.00 | 본건과 사례는 층별 효용 등 호별요인에서 대등함. |
| 기타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1.00 | - |
| 누 계 | | 0.950 | | 0.95 × 1.00 × 1.00 × 1.00 |

5)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기호 | 거래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 사정 보정 | 시정 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면적 (㎡) | 산출가격 (원) | 시산가액 (원) |
|----|----------------------------|----------|----------|--------------|-----------|-------------|-------------|
| 1 | 16,863,447 | 1.00 | 1.01579 | 0.950 | 38.115 | 620,254,344 | 620,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산가액 조정 관련사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 다만 본건의 경우,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본건 및 본건과 유사한 인근 상가의 임대사항에 대한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그 밖의 사항

1)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평가사례(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 HUB PLUS))

| 기호 | 소재지 | 층/호 | 전유면적 (㎡) | 평가액(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기준시점 | 사용승인일 | 평가목적 |
|----|---------------------|-----------|----------|-------------|---------------|------------|------------|----------|
| 1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5차 | 제1층 제10*호 | 37.125 | 613,000,000 | 16,511,785 | 2025.01.21 | 2017.01.03 | 경매 |
| 2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5차 | 제1층 제10*호 | 37.125 | 603,000,000 | 16,242,424 | 2024.11.07 | 2017.01.03 | 경매 |
| 3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5차 | 제1층 제10*호 | 22.08 | 303,000,000 | 13,722,826 | 2024.09.20 | 2017.01.03 | 공매 |
| 4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5차 | 제1층 제10*호 | 38.115 | 671,000,000 | 17,604,618 | 2022.11.03 | 2017.01.03 | 본건 시가 참고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경매통계 분석(출처 : 인포케어)

| 구분 | 낙찰율(기준:낙찰가) | | | 낙찰율(기준:낙찰건) | | | 미진행건 |
|--------|------------------|------------------|--------|-------------|--------|-------------|------|
| | 총감정가 | 총낙찰가 | 낙찰율(%) | 총건수 | 유찰건수 | 낙찰건수(율) | |
| 주택 | 45,286,359,425원 | 28,946,427,939원 | 63.9% | 173건 | 127건 | 46건(26.6%) | 35건 |
| 집합건물 | 81,528,726,920원 | 59,122,562,088원 | 72.5% | 1,116건 | 816건 | 300건(26.9%) | 102건 |
| 상가 | 82,621,034,550원 | 42,822,794,699원 | 51.8% | 423건 | 379건 | 44건(10.4%) | 56건 |
| 공장 | 65,909,696,180원 | 44,887,526,010원 | 68.1% | 193건 | 165건 | 28건(14.5%) | 43건 |
| 특수부동산 | 37,595,419,000원 | 21,700,337,805원 | 57.7% | 318건 | 251건 | 67건(21.1%) | 67건 |
| 도지 | 124,091,335,410원 | 76,418,894,578원 | 61.6% | 646건 | 480건 | 166건(25.7%) | 99건 |
| 기타도지 | 2,979,628,640원 | 1,655,982,700원 | 55.6% | 22건 | 15건 | 7건(31.8%) | 5건 |
| 차량외 기타 | 1,299,000,000원 | 969,661,608원 | 74.6% | 119건 | 67건 | 52건(43.7%) | 7건 |
| 합계 | 441,311,200,125원 | 276,524,187,427원 | 62.7% | 3,010건 | 2,300건 | 710건(23.6%) | 414건 |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 기호 | 층, 호 | 전유면적(㎡) | 대지권(㎡) | 시산가액(원) |
|----|--------------------------------------|---------|--------|-------------|
| 1 | 신장동 293-4외 화신노블레스 5차 제1층 제103호 | 38.115 | 5.3354 | 620,000,000 |

2.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상기 자료(인근 거래가액, 본건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및 가격수준 조사 등에 의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쇼핑로 64 | 293-4, 292-44, 292-45, 293-1, 293-3, 293-14, 293-31, 294-4, 294-9, 294-10, 294-11, 294-15 화신 노블레스 5차 |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 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지4층 지3층 지2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 | | | |
| 1 | 동소 | 293-4 | 대 | 일반상업지역 | | 270 | | |
| 2 | 동소 | 292-44 | 대 | 일반상업지역 | | 49 | | |
| 3 | 동소 | 292-45 | 대 | 일반상업지역 | | 66 | | |
| 4 | 동소 | 293-1 | 대 | 일반상업지역 | | 13 | | |
| 5 | 동소 | 293-3 | 대 | 일반상업지역 | | 182 | | |
| 6 | 동소 | 293-14 | 대 | 일반상업지역 | | 132 | | |
| 7 | 동소 | 293-31 | 대 | 일반상업지역 | | 35 | |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8 | 동소 | 294-4 | 대 | 일반상업지역 | 96 | | | |
| 9 | 동소 | 294-9 | 대 | 일반상업지역 | 17 | | | |
| 10 | 동소 | 294-10 | 대 | 일반상업지역 | 136 | | | |
| 11 | 동소 | 294-11 | 대 | 일반상업지역 | 264 | | | |
| 12 | 동소 | 294-15 | 대 | 일반상업지역 | 24 | | | |
| | | | | (내) | | | | |
|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 |
| | | | | 제1층 제103호 | 38.115 | 38.115 | 620,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유권대지권 | 5.3354 | | | |
| | | | | | ----- | 5.3354 | | |
| | | | | | 1,284 | | | |
| | | | | | | 토지·건물 | 배분내역 | |
| | | | | | | 토 지 : | 186,000,000 | |
| | | | | | | 건 물 : | 434,000,000 | |
| 합 계 | | | | | | | ₩620,000,000.- | |
| | | | | 이 하 | 여 | 백 |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지하철 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상용부동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01.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소매점(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1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잡종지(폐 철로)를 경유하여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근가능하고, 남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장동 293-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2-4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2-45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신장동 293-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3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1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3-3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9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1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신장동 294-15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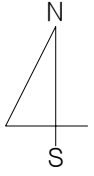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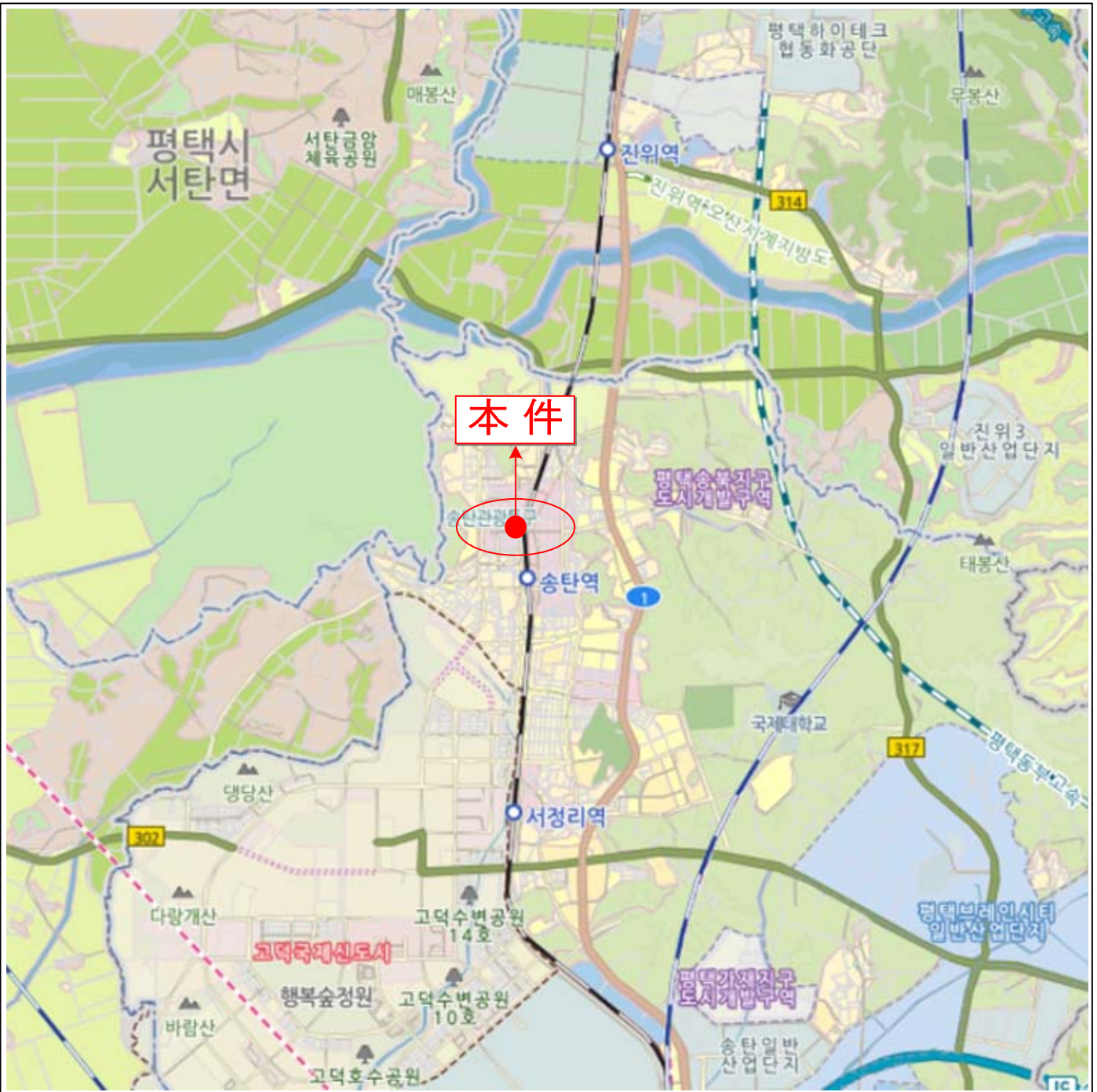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는 미상임.
- 2)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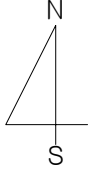
광역도



| |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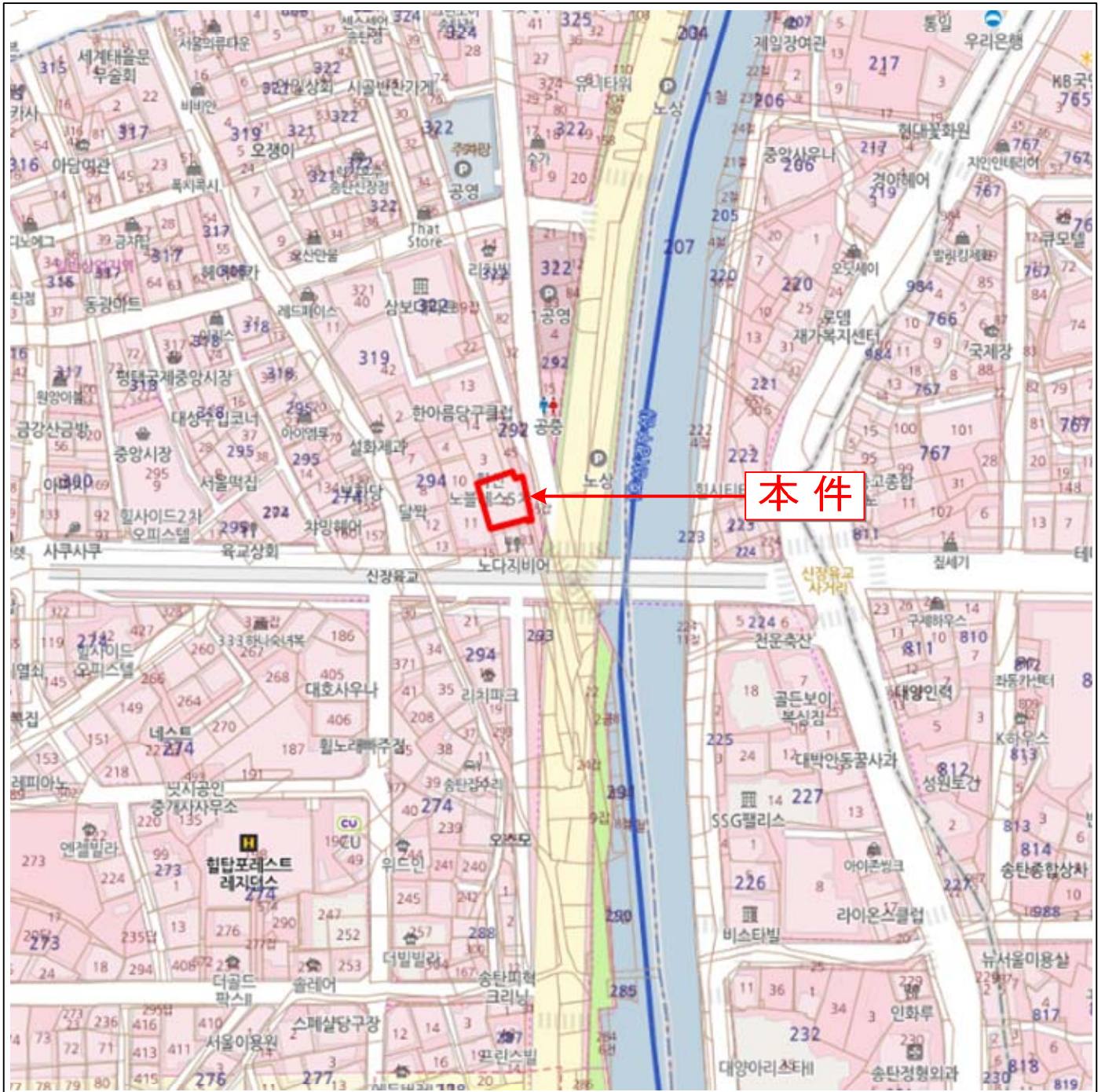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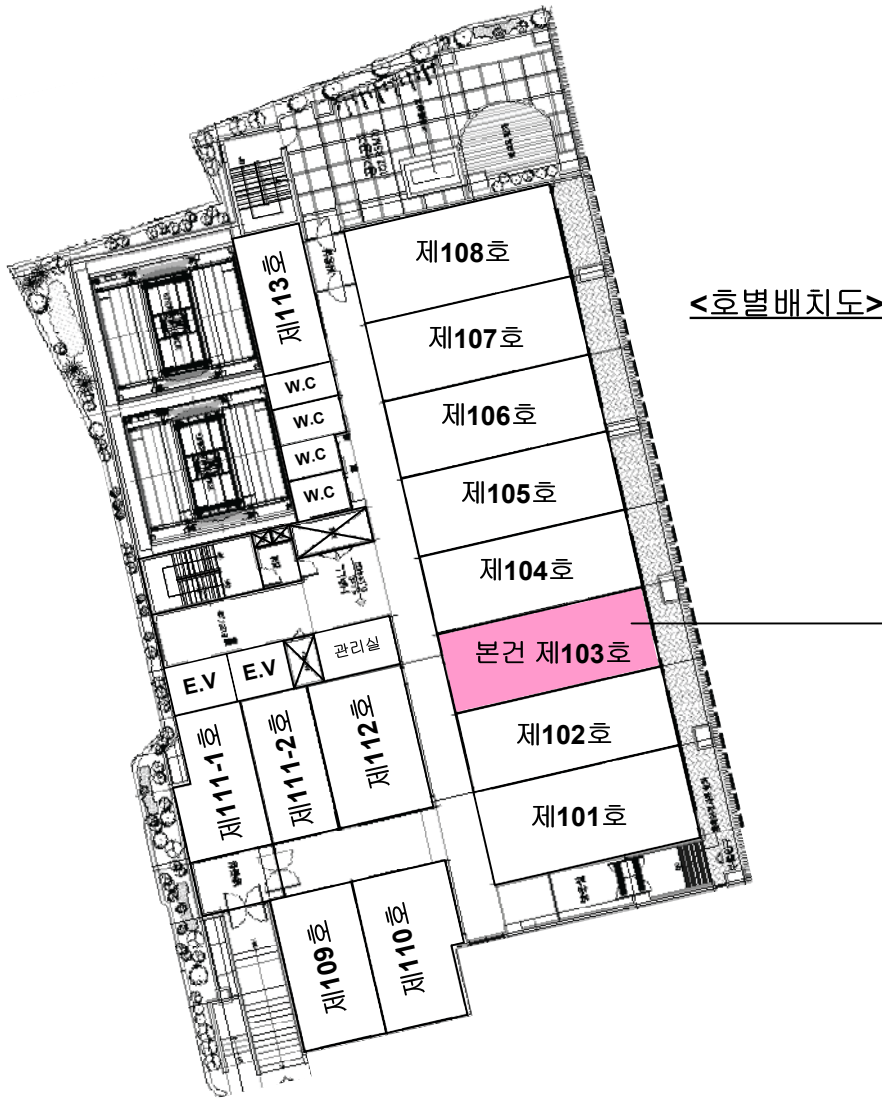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3-4외 11필지
화신노블레스5차 제1차 제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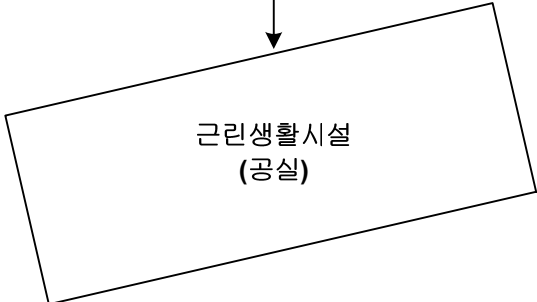


건물개황도

S = NO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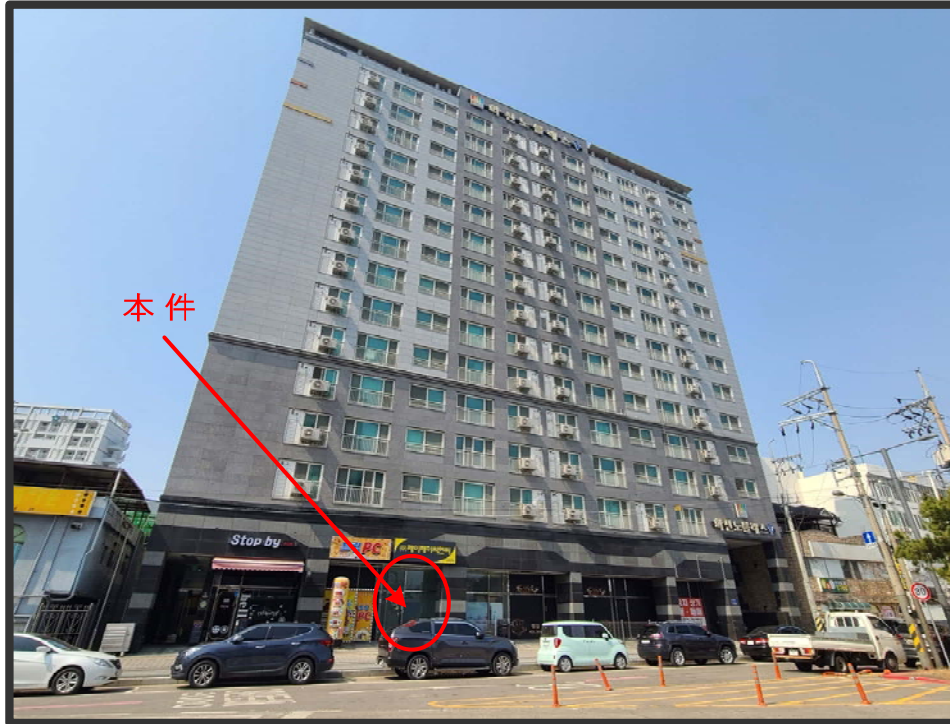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화신노블레스5차
제1층 제103호

사 진 첨 부 용 지



本件

본건 전경 - 본건 남동측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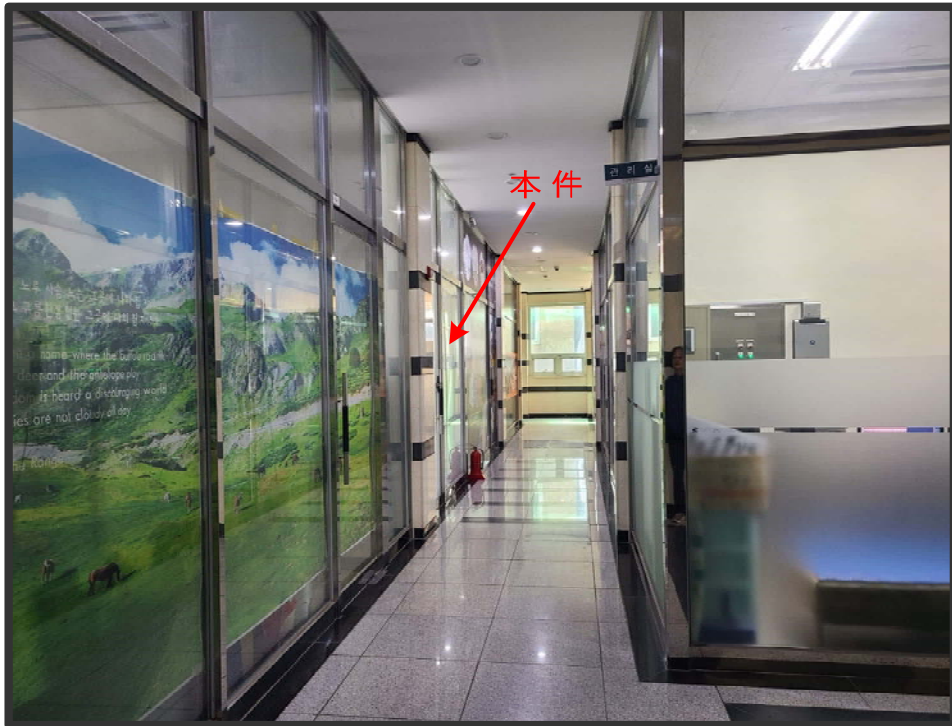


본건 전경 - 본건 동측에서 촬영

사 진 첨 부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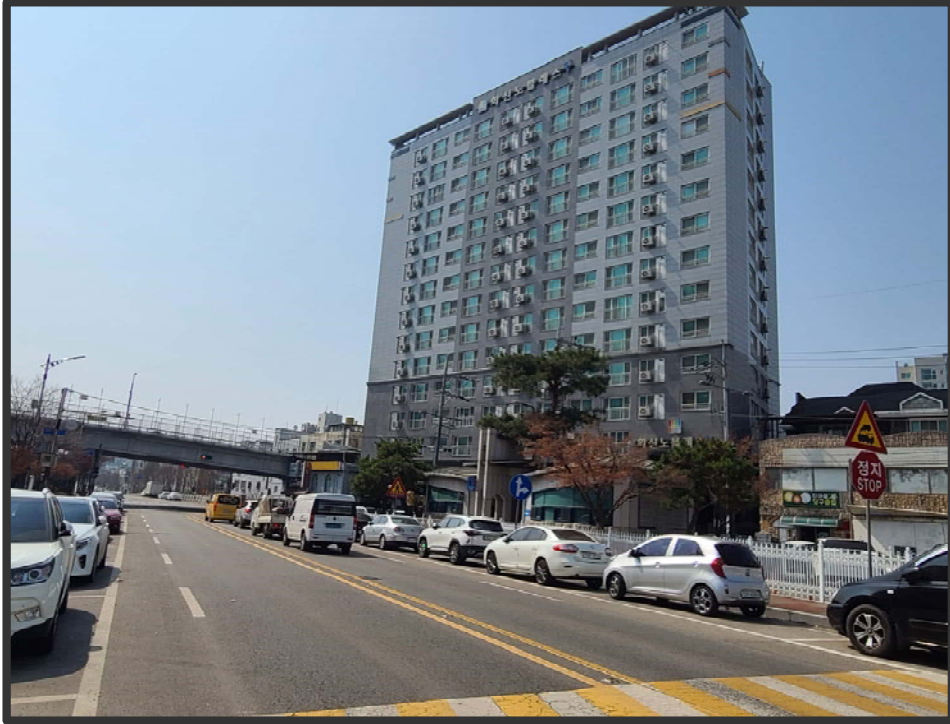


본건 복도측 출입구



본건 내부 복도

사 진 첨 부 용 지



주위환경 - 본 건물 북동측에서 촬영



주위환경 - 본 건물 남동측에서 촬영